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55

제출년월일 : 2014. 7. .
제 출 자 : 충 주 시 장

1. 제안이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가·수의매매에 관련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도매시장 저온저장고 시설물의 임대료가 시설물사용자에게 부담이 되어 이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가·수의매매 반영 내용
- 정가·수의매매를 경매와 동등한 매매방식으로 개정
- 정가·수의매매 가능 품목 규정 삭제(전 품목으로 확대)
- 정가·수의매매 거래절차 신설

나. 저온저장고 시설사용료 인하
- 재산가액이 1천분의 50 ⇒ 재산가액의 1천분의 20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붙임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14. 5. 9 ~ 5. 30)결과 : 의견접수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완료
(3) 부패영향평가 : 완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충주시 조례 제 호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부적합하다”를 “적합하지 않다”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내역”을 “명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도자금”을 “선지급자금”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거래실적과 미수금 내역 보고)”를 “(거래실적과 미수금 명세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중 “내역을”을 “명세를”로 한다.

제28조제1항 제1호 중 “해외체류”를 “국외체류”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내역”을 “명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도자금”을 “선지급자금”으로 한다.

제47조 중 “농림축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친환경농수산물로 인증을 받은 농산물

제52조제1항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을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하자가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제1항, 제2항, 제3항을 삭제한다.

제5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정가매매·수의매매 거래절차 등은

다음 방식에 따른다.

1. 출하자가 정가매매·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려면 출하 농수산물을 접수하는 도매시장법인에게 정가매매·수의매매 방식으로 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2.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가 정가매매·수의매매 방식을 요청하면 출하 접수시 정가매매·수의매매 방법 등을 기록하고,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3. 정가매매·수의매매 거래시간은 경매 전 반입물량의 경우 해당 품목 경매 실시 전에 판매하여야 하고, 정가매매·수의매매의 거래장소는 경매 또는 입찰대상 농수산물과 구별하여 진열하여야 한다.

⑥ 출하자는 사전예약으로 정가매매·수의매매를 할 때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매매체결 후 매매방법 차이로 발생한 가격차이에 대해 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

⑦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가 결정한 매매방법으로 거래된 후에는 매매방법 차이로 발생한 가격차이에 대해 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설명하여야 하고, 접수증 등에 유의사항 안내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61조 단서 중 "대하여는"를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68조 중 "10)"를 "10, 저온저장고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0)"으로 한다.

제69조제6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3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7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95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과 경매장소 (제44조 관련)

구 분	경매개시 시 각	경 매 장 소
과일류	15 : 00	청과경매장이거나 시장이 정하는 장소
채소류	17 : 00	채소경매장이거나 시장이 정하는 장소
수산류	06 : 00	수산경매장이거나 시장이 정하는 장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도매시장공판장의 조례 적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도매시장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도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도매시장공판장의 조례 적용) ---------- ---------- ---------- ---------- ---------- ---------- ---------- ------ 조례에서 ------ -------.
제12조(보증금 납부) ① (생 략)	제12조(보증금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따른 일평균 예상거래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0으로 하되 최저금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② ---------- ---------- ---------- ---------- ---------- ---------- --적합하지 않다-------- ---------- ---------- ----------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장부비치) 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제14조(장부비치) ① ------ ----------

현 행	개 정 안
하여야 한다.	-------.
1. 수입·지출 내역에 관한 현금출납장부	1. ------명세----------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2. 선지급자금----------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거래실적과 미수금 내역 보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매매참가인의 월별 거래실적과 미수금 내역을 매월 마지막 결제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31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거래실적과 미수금 명세 보고) ---------- 명세를 ----------.
제28조(보조경매참가자 운영) ① (생 략)	제28조(보조경매참가자 운영) ① (현행과 같음)
1. 질병, 장기출타, 장기 해외체류	1. ---------- 국외체류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장부비치) ① 시장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5조(장부비치) ① ----------.
1. 수입·지출 내역에 관한 현금출납장부	1. ------ 명세----------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2. 선지급자금----------

현 행	개 정 안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7조(경매사 관리)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임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과 농림축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경매사관리)--------------------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51조(대량입하품 등의 우대) ①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선 판매 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51조(대량입하품 등의 우대) ①----------.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로 인정받은 농산물	8.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친환경농수산물로 인증을 받은 농산물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52조(매매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경매나 입찰의 방법으로 도매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매매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을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하자가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

현 행	개 정 안
	라 매매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4조(정가매매·수의매매)	제54조(정가매매·수의매매)
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가매매·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품목은 각 호와 같다.	(삭 제)
1. 청과부류 : 수입농산물, 두채류·두부·고춧가루·단무지·묵류·메주 등 농산물 단순가공품, 생강, 깐마늘, 당근, 고구마, 나물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으로 거래물량이 적거나 경매나 입찰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품목	
2. 수산부류 : 메기·미꾸라지·붕어·향어·송어·가물치·민물돔·망둥어·볼락류·농성어·농어·연어·멍게·우럭·아나고·광어 등 활어류, 패류, 건어류	
②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경매시작 전 반출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삭 제)

현 행	개 정 안
같다. 1. 청과부류 : 열무, 상추, 딸기, 시금치, 부추, 파, 미나리, 쑥갓 등 저장성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농산물 2. 수산부류 : 활어류	
③ 제2항에 따라 반출된 경우 가격은 출하자·경매사·중도매인의 협상에 의하여 결정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정가매매·수의매매 거래절차 등은 다음 방식에 따른다. 1. 출하자가 정가매매·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려면 출하 농수산물을 접수하는 도매시장법인에게 정가매매·수의매매 방식으로 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2.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가 정가매매·수의매매 방식을 요청하면 출하 접수시 정가매매·수의매매 방법 등을 기록하고,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3. 정가매매·수의매매 거래시간은 경매 전 반입물량의 경우 해당 품목 경매 실시 전에 판매하여야 하고, 정가매매·수의매매의 거래장소는 경매 또는 입찰대상

현 행	개 정 안
	농수산물과 구별하여 진열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출하자는 사전예약으로 정가매매·수의매매를 할 때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매매체결 후 매매방법 차이로 발생한 가격차이에 대해 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
(신 설)	⑦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가 결정한 매매방법으로 거래된 후에는 매매방법 차이로 발생한 가격차이에 대해 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설명하여야 하고, 접수증 등에 유의사항 안내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61조(거래단위)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단위는 중량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중량단위로 거래하기가 어려운 물품에 대하여는 거래관습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제61조(거래단위) -------- ------------------- ------------------- ------------ 대해서는 ------------------- -------------------.
제68조(시설사용료)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매시장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시행규칙 제44조의 부수시설 중 농산물품질관리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사	제68조(시설사용료) ------- ------------------- ------------------- ------------------- ------------------- -------------------

현 행	개 정 안
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점포·중도매인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 ---------- ---------- -- 10, 저온저장고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0)-.
제69조(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와 사용) ①~⑤ (생 략)	제69조(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와 사용)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규격출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그 밖의 ---------- ----------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73조(부속업소의 제한)도매시장 안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과 거래관계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속업소를 둘 수 있다.	제73조(부속업소의 제한)----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도매시장 운영상 직접 필요한 부대시설	6. 그 밖의 ---------- ----------
제77조(시설변경의 금지) 도매시장법인 기타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장시설의 신축·증축·개보수·철거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 및 용도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제77조(시설변경의 금지) --- -------- 그 밖의 ------ ---------- ---------- ---------- ----------

현 행	개 정 안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9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5조(시행규칙) ----------.

관 계 법 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매매방법)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隨意賣買)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①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대금정산조직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2, 2013.3.23>

1.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징수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
2.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시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사용료
3.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4.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매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5. 거래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 등이 대금정산조직에 납부하는 정산수수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매매방법) ① 법 제32조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1. 경매 또는 입찰
   가. 출하자가 경매 또는 입찰로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한 경우(제2호나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방법을 경매 또는 입찰로 정한 경우
   다. 해당 농수산물의 입하량이 일시적으로 현저하게 증가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2.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가. 출하자가 정가매매·수의매매로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한 경우(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방법을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정한 경우
   다.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자거래 방식으로 매매하는 경우
   라.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법 제27조에 따른 경매사가 경매를 실시하는 농수산물집하장을 포함한다)에서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을 반출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가격·반출지·반출물량 및 반출차량 등을 확인한 경우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거래방법·물품의 반출 및 확인절차 등을 정한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미리 가격이 결정되어 입하된 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바. 경매 또는 입찰이 종료된 후 입하된 경우
   사. 경매 또는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매매되지 아니한 경우
   아. 법 제34조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자.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②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거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3]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하는 도매시장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이를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중 도매시장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할 사용료 총액이 해당 도매시장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1천분의 5.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그 거래한 물량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을 법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전자거래소(이하 "농수산물 전자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경우

나.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가·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거래 대상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한 경우

2.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이 납부할 사용료는 해당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할 것

②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 2의 부수시설 중 농산물 품질관리실, 축산물위생검사 사무실 및 도체(屠體) 등급판정 사무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 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 점포·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 중 도매시장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1. 양곡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2. 청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3. 수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4. 축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안에 도축장이 설치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도살·해체수수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화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6. 약용작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

④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정액의 위탁수수료는 도매시장법인이 정하되, 그 금액은 제3항에 따른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⑤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으로 하며, 도매시장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⑥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징수하는 중개수수료는 제3항에 따른 해당 부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⑦ 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산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도매시장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정산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1. 정률(定率)의 경우: 거래건별 거래금액의 1천분의 4
2. 정액의 경우: 1개월에 70만원

[전문개정 2012.8.2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해당 없음

3. 미첨부 사유

- 해당 없음

4. 작성자

-농업정책국 농정과장 정창열